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526819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C

변론 종결2016. 10. 6.

판결 선고2016. 10. 27.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6,204,275원 및 이 중 171,345,282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2014. 10.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206,204,27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06,204,2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 C와 피고 A 사이에 2014. 10.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원고는 2013. 5. 30.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3. 5. 30.부터 2014. 5. 30.까지(이후 2015. 6. 1.까지로 연장됨),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율 연 12%로 각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2013. 5. 30. 국민은행으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국민은행은 2015. 3. 20. 원고에게 같은 달 18.자로 신용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7.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를 대위하여 국민은행에게 172,686,322원(= 원금 170,000,000원 + 이자 1,345,282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가 피고 A를 대위하여 변제한 금원에 대한 위 대위변제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0. 6.까지의 약정이율 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이율(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총 33,517,953원인바, 그 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71,345,282원	2015. 07. 01.	2015. 08. 04.2)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35	12%	1,971,644원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71,345,282원	2015. 08. 05.	2015. 09. 30.	57	20%	5,351,606원
171,345,282원	2015. 10. 01.	2016. 10. 6.	372	15%	26,194,703원
합계	33,517,953원				

4) 한편,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보증채무이행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든 비용 및 미납 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 A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과 미납 보증료는 총 1,341,040원(= 비용 1,097,920원 + 미납 보증료 243,120원)이다.

나. 피고 A 등의 재산처분 행위 등

1) 피고 A는 2014. 10. 21.경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 피고 A는 2014. 10. 25.경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4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각 피고 A, 근저당권자를 각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는 순위번호 1 내지 10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무자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근저당권자를 E, F,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순위번호 13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순위번호 1 내지 10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서는 2015. 6. 8. 같은 달 4.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가, 순위번호 13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서는 2015. 3. 24.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서는 2014. 11. 14.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4) 피고 B은 2015. 3. 2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 앞으로 같은 달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같은 해 5. 22. G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A의 무자력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는바, 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부동산	1,450,000,000원
2	서울 성동구 H 외 1필지 지상 아파트 3층 302호	393,000,000원
합계금	1,843,000,000원	

1	국민은행(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권)	815,000,000원
2	E, F	300,000,000원
3	피고 C	600,000,000원
4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5,000,000원
5	국민은행(적극재산 순번 2의 피담보채권)	192,000,000원
6	서울신용보증재단	281,160,001원
7	J	200,000,000원
8	케이비국민카드	32,758,824원
9	원고	170,000,000원
합계금	2,615,918,82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6,204,275원(= 대위변제금 171,345,282원 + 대위변제일인 2015. 7.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0. 6.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금 33,517,953원 + 비용 및 미납 보증료 1,341,040원) 및 이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위변제금 171,345,282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 B와 C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당시 원고와 피고 A 사이에는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5개월이 지난 2015. 3. 1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5. 7. 1.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피고 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피고 A의 행위는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A에게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을 변제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경료받은 피고 피고 C,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액이 줄어든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일부가 변제됨으로써 법원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취소채권자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의 시가에서 공제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권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민은행, E, F로 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을 각 공제한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그 가액을 한도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갑 제9, 10,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는 적어도 1,550,000,000원에 이르는 사실,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된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815,000,000원이고, E, F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300,000,000원이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은 2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410,000,000원(= 1,550,000,000원 - 815,000,000원 - 300,000,000원 - 25,000,000원, 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피담보채무액 600,000,000원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 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0. 6. 현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6,204,2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206,204,27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일부가 사해행위로 취소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06,204,2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청구

피고 C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11. 14.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및 원상회복의 범위가 달라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참조).

마. 피고 B와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자신은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가격에 매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 내지 14호증, 을나 제6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와 당원이 국민은행 장안동지점 및 국민은행에 대하여 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과 그녀의 전 남편인 K는 피고 A가 경영하는 D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직전인 2014. 9.경까지 동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전후하여 동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피고 B은 K로부터 금원을 대여하여 피고 A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A는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K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B은 K로부터 위 금원을 다시 송금받아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그가 피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피고 A로부터 차후에 대여금을 상환받기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그 말소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C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원규

별지

1) 주문 제1항의 금원과 원고의 2016. 9.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변경된 청구취지 제1항의 금원은 그 수액이 동일하다.

2)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